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기획평가과), 02-970-6066

제정 2012. 3. 1.

학칙개정 2017. 7. 3.

전부개정 2021. 2. 23.

학칙개정 2021. 10. 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 2,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92조에 따라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학칙개정 2021. 10. 1.)

제2조(정의) "자체평가"란 우리 대학의 교육·연구, 조직·운영, 시설·설비 등 학교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·분석·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평가원칙) 자체평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으로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.

제4조(평가시기) 자체평가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이 우리 대학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연도 자체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.

제2장 위원회

제5조(위원회)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체평가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로 한다)
- 2. 자체평가 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로 한다)

제6조(운영위원회 구성과 임무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, 교육부총장, 연구기획부총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연구처장, 교육혁신처장, 사무국장, 미래전략본부장, 정보전산원장, 국제교육본부장, 공동실험실습관장을 위원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.

- ②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자체평가 기본방향 수립
- 2. 자체평가 전반에 대한 자문
- 3. 실무위원회 자체평가 결과 심의
- 4. 그 밖에 실무위원회가 요청한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교무회의에서 의결한 자체평가 사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다.

제7조(실무위원회 구성과 임무)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-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실무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자체평가 실시
- 2. 지표개발 또는 개발지표 검수
- 3.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
- 4. 자체평가 결과 공시자료 작성
- 5. 그 밖에 자체평가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3장 평가방법 및 절차

제9조(평가기준 수립) 실무위원회는 평가기준을 수립하고,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.

제10조(자체평가 실시) ① 자체평가는 실무위원회에서 실시한다.

- ② 실무위원회는 자체평가와 관련한 자료를 담당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③ 실무위원회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밖의 정보공시자료나 고등통계자료 등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④ 방문평가가 필요할 때는 해당 부서에 미리 알리고 방문하여야 한다. 제11조(의견수렴) 실무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부서에 통지하고 의견을 수렴한다. 제12조(평가결과 확정) ① 실무위원회는 의견 수렴을 거친 자체평가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.
 - ② 운영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 상정한 자체평가 결과를 심의한다.
- ③ 자체평가 평가결과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. 제13조(평가결과 공개) ① 평가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
 - ②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공시내용 및 범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제14조(평가결과 활용)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학교 발전계획 수립 및 개선·조정
- 2. 교육·연구 질적 향상
- 3. 교육·행정체제 등 교육 여건 개선
- 4. 그 밖에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이 필요한 사항

제15조(수당 등) 자체평가에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그 밖의 사항) 자체평가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다.

부칙(제33호, 2012. 3. 1.)

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382호, 2017, 7, 3.)

이 규정은 곳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제584호, 2021, 2, 23.)

이 규정은 2021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정 제635호, 2021. 10. 1.) (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